



2011. 12. 22.

사건번호 2011년 형제89818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한석리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 I. 피의자 1. 가, 나, 다 이성규
2. 가, 나, 다 성명불상
- II. 죄 명 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나. 공무상비밀누설
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III. 주 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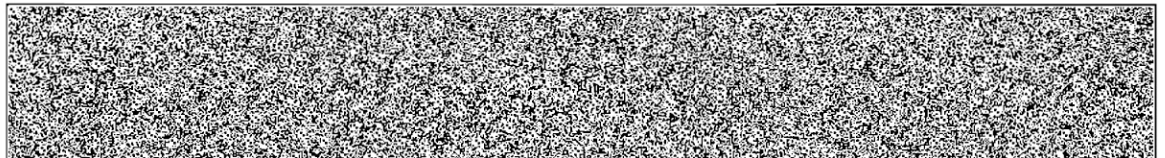
IV.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에게 반값등록금촉구집회의 단순 참가자 등에 불과한 고소인 김 에 대한 사진 촬영을 지시하고, 위 경찰관들은 2011. 5. 29.부터 6.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화문 부근, 청계광장 부근 등지에서 개최된 반값등록금촉구집회에 단순참가자로 참가한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인의 허락없이 수 회에 걸쳐 사진촬영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채증 경찰관들이 2011. 5. 31.부터 같은 해 6. 10.까지 사이에 반값등록금촉구집회 등에 참가한 고소인이 경찰관에 둘러싸인 모습과 유인물을 들고 차도를 점거한 모습(5. 31. 집회), 차도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모습(6. 1.부터 6. 5.까지 4회에 걸친 집회), 청계천 물길 옆 인도에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하는 모습(6. 6. 집회), 신교로터리 차도점거 연설 모습(6. 10.) 등을 사진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불법집회라고 하더라도 집회나 시위가 시작되기 전 또는 집회를 마친 후 다른 집회 현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범죄가 되지 않고, 또한 반값등록금촉구집회와 같





은 미신고집회의 단순참가자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집회 전 및 집회가 이어질 경우 그 사이 사이의 고소인의 모습 또는 위 반값등록금촉구집회에 단순참가하고 있는 고소인의 모습을 영장없이 수사목적으로 촬영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로서, 고소인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인격권을 침해하여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경감 박규성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채증경찰관들이 채증을 위해 고소인을 사진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채증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것으로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 채증사진을 볼 때 고소인은 단순참가자가 아닌 미신고집회의 주최자로 보인다고 진술한다.

○ 살피건대,

- 미신고집회의 단순참가자인지 아니면 집회주최자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에는 추후 수사를 통해 주최자를 확정해야 하므로, 수사를 위한 기초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집회참가자들을 사진촬영하는 것이 반드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 집회나 시위 전후 또는 이동중에 있는 참가자들과 불법집회의 단순 참가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도로불법점거,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 발생 우려를 감안할 때 증거수집을 위한 채증의 필요성이 반드시 없다고 할 수 없는 바,

- 이 사건 채증사진을 보면, 고소인이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등으로 다른 집회 참가자들을 이끄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고소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하여 추후 범죄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 고소인을 포함한 집회참가자들을 사진촬영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보인다.

○ 달리 피의자들 또는 채증 경찰관들이 그 직권을 남용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각각 범죄혐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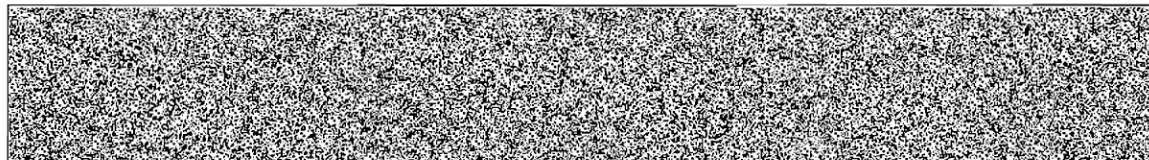
2.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채증한 사진이 공무상 기밀이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2011. 7.경 경찰관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한다는 명목하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경찰관 및 외부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위 채증사진들에 대한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선정된 우수작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등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이자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인 위 채증사진을 누설하여 공무상비밀누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인정되는 사실

- 2011. 7. 초경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11년 상반기에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관 및 전의경 채증요원이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캡처 장면’에 대한 ‘Best-Photographer’ 선발 계획을 공모하고, 같은 해 7. 14.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경찰관 6명, 외부전문가 2명을 위원으로 하는 심사위원회에서 금?은?동상 3명, 입선 12명 총 15명을 선정하였다.

-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위 15명이 촬영한 사진 15매와 기타 불법 폭력행위 채증사진 10매, 배너 1점에 대하여, 사진상의 사람들에 대하여 모자이크 처리를 한 후 같은 해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32-5669-8924-10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



7.경부터 8.말까지는 서울지방경찰청 1층 로비와 기동본부에 순회전시를 하고, 8. 29. 부터 12. 13.까지는 관내 31개 경찰서에 순회전시를 하던 중 9. 2.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된 이후 순회전시를 중단하였다.

○ 고소인 및 고발인의 주장

- 고소인 및 고발인 장 은 경찰관이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수사상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함에도 이를 무작위로 외부에 유출시켜 외부전문가들의 품평을 받게 하고 전시를 한 것은 공무상비밀의 누설에 해당하고 또한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각각 주장한다.

○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 경감 박규성은 이 사건 채증사진 ‘Best-Photographer’ 선발은 일선 채증요원들의 사기진작 및 사진촬영 기술의 향상을 위한 것이었고, 선발된 사진의 전시는 외부행사가 아닌 경찰청 내부행사로서 경찰관들에게 불법폭력행위의 실상을 알려 폭력시위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사진상의 인물들에 대하여는 모자이크 처리를 하여 촬영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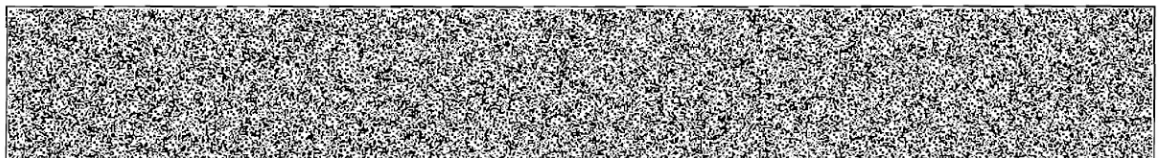
○ 판단

- 이 사건 중 ‘Best-Photographer’ 선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채증 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이라는 목적하에 개최된 것이고, 경찰관 6명과 외부위원 2명 등 특정된 소수의 위원들이 우수사진 선정만을 위해 채증사진을 검토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선발된 사진을 전시한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 사건 전시행사는 서울지방경찰청 내부에서 개최된 행사이고, ‘불법폭력행위의 실상을 알려 폭력시위의 폐해를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특정된 목적하에 개최되었으며, 이 사건 사진에 현출된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행위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달리 이 사건 행위로 인해 공무상비밀이나 개인정보가 누설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각각 범죄혐의 없다.



본 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되었으며 전자민원 홈페이지(www.kics.go.kr)의 발급문서확인 메뉴를 통해 위 문서확인번호(1132-5669-8924-1000) 또는 문서하단의 바코드로 내용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주십시오. 다만, 문서확인번호를 통한 확인은 발급일로부터 90일까지 가능합니다.